

영축총림 통도사 성보박물관 문화자원봉사회 회칙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本會는 영축총림 통도사 성보박물관 문화자원봉사회(약칭: 문화자원봉사회)라 칭한다.(이하 本會라 칭한다.)

제2조(목적) 本會는 올곧은 信心을 가진 佛弟子들로 구성하여서, 통도사 성보박물관 설립 취지 및 정관에 따라 불교문화재를 수호하고, 불교문화를 계승하며, 불교의 흥포 및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3조(소재지) 本會의 주된 사무소는 통도사 성보박물관 내에 둔다.

제4조(사업) 本會는 會則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

- ① 통도사 성보박물관 문화재에 대한 해설봉사 활동
- ② 전시된 문화재의 안정성 확보 및 도난 등에 대한 예방활동
- ③ 회원의 자질향상을 위한 각종 교육
- ④ 회원 상호부조
- ⑤ 기타 本會의 설립목적 및 성보박물관의 방침에 의한 활동 등

제2장: 회원

제5조(회원의 모집) 本會의 회원모집은 운영규칙으로 규정한다. 本會에 회원으로 입회하고자 하는 者는 本會에서 규정한 入會願書를 작성하여 本會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회원의 분류) 本會 회원은 정회원·준회원·휴식년회원·명예회원으로 한다.

제7조(회원의 자격) 本會 회원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 ① 本會 회원은 만 30세부터 만 75세 이하의 佛弟子로 한다.
단, 신입회원의 입회연령 상한선은 운영규칙으로 규정한다.
- ② 本會 정회원은 本會의 會則에 규정한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후 성보박물관장의 승인을 득한 者로 한다. 단, 승인형식은 교육 수료증 수여로 한다.
- ③ 本會 준회원은 本會 입회 후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회원 및 징계에 의하여 권리제한 처분을 받은 회원을 의미한다. 단, 신입회원은 本會 입회 이후에 최초로 실시하는 소정의 기본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하면 회원자격을 박탈한다.
- ④ 本會의 휴식년회원은 정회원 가운데 12개월 이상 활동을 할 수 없는 회원으로서, 소속된 봉사조 조장의 승인을 득한 者로 한다. 단, 당해 봉사조장은 휴식년을 승인한 한 후에는 10일 이내 本會 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⑤ 本會의 명예회원은 정회원으로 10년(휴식년 기간 제외) 이상 활동한 회원 가운데 위 ①호의 규정에 정의한 정년을 초과한 회원으로서, 명예회원증을 신청한 회원 중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득한 者로 한다.

단, 명예회원이 봉사활동을 계속하고자 할 시에는 本會 會則 제8조에 규정한 회원

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8조(회원의 의무) 本會의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① 自願奉仕者로서 품위유지
- ② 本會의 會則 및 근무수칙 준수
- ③ 불교문화 해설봉사 활동이행
- ④ 本會에서 실시하는 교육이수
- ⑤ 기타 本會에서 주관하는 제반활동 참여

제9조(회원의 권리) 本會 회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 ① 本會의 會則에 의한 임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
- ② 本會의 의사결정을 위한 각종 투표권
- ③ 本會의 회의 참석 및 의사개진의 권리
- ④ 本會에서 시행하는 교육을 받을 권리
- ⑤ 本會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참여할 권리
- ⑥ 통도사 성보박물관에서 발행하는 회원증을 배부 받을 권리

제10조(권리의 제한) 本會의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권리행사에 제한을 받는다.

- ① 本會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경제적 이해 당사자인 회원은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다. 단, 의사를 개진하는 권리는 제한받지 아니한다.
- ② 本會의 회원이 포상 및 징계의 당사자인 경우에는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다. 단, 징계 당사자의 소명의 권리는 제한받지 아니한다.
- ③ 本會의 회원이 그 자격을 상실한 경우 이미 납부한 기부금, 부과금 및 기타 재산상의 청구를 할 수 없다.
- ④ 本會의 명예회원은 會則 제9조의 권리는 행사할 수 없으며, 준회원과 휴식년회원은 會則 제9조 ①호와 ②호의 권리는 행사할 수 없다.

제11조(회원의 휴식년제) 本會 정회원의 휴식년제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 ① 本會 회원이 일신상 합당한 사유로 인하여, 한시적으로 本會의 활동을 휴식하고자 할 때에는 조장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 ② 1회의 휴식년은 12개월로 하며, 연속하여 36개월을 초과할 수가 없다.
- ③ 휴식년 기간이 위 ②호의 규정을 초과할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제12조(재가입 제한) 本會를 자의로 탈퇴한 회원과 징계에 의하여 자격을 박탈당한 회원은 本會를 재가입할 수 없다.

제3장: 조직 및 소임(임원 포함) 등

제13조(조직) 本會의 조직은 다음 각 항에 의한다.

제1항(조직) 本會는 다음 각 호의 조직을 둔다.

- ① 회주: 성보박물관장 관장 스님을 당연직 회주로 한다.
- ② 지도법사: 성보박물관 부관장 스님을 당연직 지도법사로 한다.
- ③ 임원: 임원은 會則 제14조·제15조·제16조·제17조에 의한다.

제2항(권능) 회주와 지도법사의 권능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 ① 회주는 本會의 정신적 지도자로서 本會를 지도하며, 권능은 다음과 같다.

- (가) 本會 해산 명령권
- (나) 本會 會則 등 규정의 개정 명령권
- (다) 本會 회장 및 감사 조장 선출에 대한 승인권 및 임면권
- (라) 本會 회원의 징계에 대한 승인권 및 本會 회원에 대한 징계권
- (마) 本會 포상 건의에 대한 승인권 및 포상권
- (바) 本會의 결정에 대한 거부권
- (사) 本會 입회 승인권
- (아) 기타 本會 운영전반에 대한 지도권

단, 회주의 권리행사는 本會 운영위원회 또는 임원회의에서 사유를 표명함으로 성립하며, 회주가 공석일 경우에는 지도법사가 회주의 권능을 가진다.

- ② 지도법사의 권능은 다음과 같다.

- (가) 本會 정기감사에 대한 검증
- (나) 本會 사무전반에 대한 열람 및 지도
- (다) 기타 회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단, 성보박물관 부관장이 공석일 경우에는 회주가 지도법사의 권능을 가진다.

제14조(임원) 本會의 임원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 ① 회장: 1명 ② 부회장: 3명 이내 ③ 선출직 감사: 2명 ④ 고문: 1명
- ⑤ 자문: 약간 명 ⑥ 사무국장: 1명 ⑦ 총무: 1명 ⑧ 재무: 1명 ⑨ 각 조별 봉사조장 1명 및 총무 1명

단, 사무국장과 재무를 선임하지 않을 경우 총무가 그 직무를 대신한다.

제15조(임원의 임기) 本會 임원의 임기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 ① 本會 선출직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② 本會 당연직·위촉직 및 각 봉사조장의 임기는 규정하지 아니한다.
- ③ 本會 임원의 결원으로 보선된 者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16조(임원의 선임) 本會 임원의 선임은 다음 각 항에 의한다.

제1항(임원의 선출) 本會 임원의 선출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 ① 회장은 당해 연도 직전 12월 임원회의에서 선출한다.
- ② 부회장·사무국장·총무·재무는 本會 회장이 위촉한다.
- ③ 감사는 당해 연도 직전 12월 임원회의에서 선출한다.
- ④ 고문은 직전회장을 당연직으로 한다.

- ⑤ 자문은 本會 회장을 역임한 회원 가운데 회장이 위촉한다.
- ⑥ 봉사조장 및 총무는 당해 봉사조에서 추천하고, 회장이 위촉한다.
- ⑦ 기타사항(선출직의 후보등록 등)은 운영규칙으로 규정한다.

제2항(임원의 임면) 本會 임원은 회주의 임명으로 성립하며, 면직명령으로 그 직위를 상실하며,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의 공지는 임원회의 또는 총회에서 한다.

제17조(임원의 자격요건 및 책무) 本會 임원의 자격요건 및 책무는 다음 각 항에 의한다.

제1항(임원의 자격요건) 本會 임원의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 ① 本會의 회장은 本會에 입회하여, 정회원으로서는 휴식년 기간을 제외하고 5년 이상 봉사활동을 한 회원으로서, 本會 임원(감사·부회장·총무·재무·봉사조장·조별총무)을 수행한 경력을 갖춘 자로 한다.
- ② 本會의 감사·부회장·사무국장·총무와 재무는 本會에 입회하여, 정회원으로서는 휴식년 기간을 제외하고 3년 이상 봉사활동을 한 자로 한다.
- ③ 本會의 각 봉사조장 및 총무는 本會에 입회하여, 정회원으로서는 휴식년 기간을 제외하고 2년 이상 봉사활동을 한 자로 한다.

제2항(임원의 책무: 권능 포함) 本會 임원의 책무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 ① 회장의 책무: 회장의 책무는 다음과 같다.
 - (가) 本會를 대표하고 本會 업무를 총괄하며, 모든 법적 책임을 진다.
 - (나) 本會의 총회·임원회의·운영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 (다) 本會 부회장·사무국장·총무·재무 및 각 봉사조 조장과 총무 위촉 및 해임
 - (라) 本會 자문 위촉 및 해임(안) 상정
 - (마) 本會 선출직 임원의 해임(안) 상정
 - (바) 本會에서 포상을 의결한 회원에 대한 포상 내지 회주에게 포상 건의
 - (사) 本會에서 징계를 의결한 회원에 대한 징계 내지 회주에게 징계 건의
- ② 부회장의 책무: 부회장은 회장을 보필하며, 회장 유고시에 회장의 직무를 대행하며, 다만 수석부회장을 임명하지 아니한 때에 부회장이 복수인 경우에는 1차로 本會 입회순서와 2차로 연령순에 따라 순차적으로 선임자를 수석부회장으로 한다. 단, 회장·부회장 공히 유고시에는 고문이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③ 감사의 책무: 감사는 本會의 재무회계 및 일반회무에 대한 감사권을 가지며, 감사결과를 本會의 회장에게 통보하고, 本會의 총회 및 임원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④ 고문의 책무: 고문의 책무는 다음과 같다.
 - (가) 本會 회장의 자문(총회·운영위원회·임원회의 상정안)에 대한 견해를 회의개시 전에 회장에게 개진한다.
 - (나) 本會 회장·부회장 공히 유고 시에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다) 本會 회장의 해임(안)을 절차에 따라서 운영위원회에 상정하고 의장이 된다.

- (라) 본會 회장의 징계(안)을 절차에 따라서 운영위원회에 상정하고 의장이 된다.
- ⑤ 자문의 책무: 자문은 본會 회장의 자문이 있을 경우에 견해를 표명한다.
- ⑥ 사무국장의 책무: 사무국장은 본會의 업무전반(일반회무·재무회계·상조회 포함)에 대한 기록을 유지하여, 회장 및 당해 회의에서 보고하며, 회장의 지시에 의하여 업무전반을 총괄한다.
- ⑦ 총무의 책무: 총무는 본會의 일반회무에 대하여 기록을 유지하여, 회장 및 당해 회의에서 보고하며, 회장의 지시에 의하여 일반회무를 집행한다.
- ⑧ 재무의 책무: 재무는 본會의 재정 및 회계전반에 대하여 기록을 유지하여, 회장 및 당해 회의에서 보고하며, 회장의 지시에 의하여 재정을 집행한다.
- ⑨ 각 봉사조 조장 및 총무의 책무: 봉사조장과 총무의 책무는 다음과 같다.
 - (아) 조장: 봉사당일 입재, 지각 및 조퇴를 포함한 출석부 정리, 근무배치 등
 - (나) 총무: 조장의 지시사항 이행 및 조장 부재 시에 조장의 책무를 대행한다.
 - (다) 기타 세부사항은 근무수칙으로 규정한다.
- ⑩ 위 ⑥호의 사무국장 및 ⑧호의 재무를 위촉하지 아니한 때에는 본會 총무가 그 책무를 대행한다.

제4장: 회의 및 회의기관

제18조(회의의 종류) 본會 회의의 종류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 ① 정기총회: 당해 연도 정기총회는 익년 1월의 임원회의를 겸하여 개최한다.
- ② 임시총회: 임시총회는 會則 제19조 제2항에 해당하는 안건의 의결이 긴급한 경우 회장의 요청 또는 재적 임원 1/5 이상의 요청에 의하여 회장이 소집한다.
- ③ 임원회의(월례회): 임원회의는 매월 첫째 화요일에 회장이 소집하며, 장소는 성보박물관 문화센터로 한다.
단, 1월 임원회의는 둘째 화요일에 개최한다. 그리고 부득이한 경우 운영위원회의 의결로서 임원회의(월례회) 개최여부·일시와 장소 등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회의 개최 일주일 전에 해당 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④ 운영위원회: 운영위원회는 會則 제21조 제2항에 해당하는 안건의 심의가 긴급한 경우에는 회장의 요청에 의하여 소집한다.

제19조(총회) 본會 총회의 구성과 권능은 다음 각 항에 의한다.

- 제1항(총회의 구성) 총회는 본會의 모든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단, 준회원·휴식년회원· 명예회원의 권리는 會則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제한된다.
- 제2항(총회의 권능) 총회의 권능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 ① 본會 임원회의에서 가결된 會則 개정의 추인
 - ② 본會 임원회의에서 선출된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공지(임명장 수여 등)
 - ③ 본會 임원회의에서 가결된 본會 해산결정 추인
 - ④ 본會 임원회의에서 가결된 예산 및 결산 추인

제20조(임원회의의 구성과 권능) 本會 임원회의(월례회)의 구성과 권능은 다음 각 항에 의한다.

제1항(임원회의의 구성) 임원회의는 本會 會則에 규정한 임원으로 구성한다.

제2항(임원회의의 권능)

- ① 本會 會則의 제정 및 개정 의결
- ② 本會 임원의 선출 및 해임 의결
- ③ 本會 해산(안) 심의·의결
- ④ 本會 예산 및 결산 승인
- ⑤ 本會 사업계획(교육계획 포함)의 승인
- ⑥ 會則 제19조 제2항에 규정한 총회의 권능 가운데 ①호 ③호 ④호의 추인이 부결된 안건에 대한 재심의·의결

단, 총회의 권능에 관한 사항은 심의·의결할 수 없다.

제21조(운영위원회) 本會 운영위원회의 구성과 권능은 다음 각 항에 의한다.

제1항(운영위원회의 구성) 운영위원회는 회장·부회장·감사·고문·자문·사무국장·총무·재무로 구성한다.

제2항(운영위원회의 권능) 운영위원회의 권능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 ① 임원회의에서 위임한 사항
- ② 임원회의의 승인을 요하는 안건에 대한 심의
- ③ 會則에 대한 유권해석
- ④ 포상 및 징계 건에 대한 심의·의결
- ⑤ 本會 근무수칙 및 운영규칙의 제정 및 개정
- ⑥ 本會의 사업계획(교육계획 포함)에 관한 건 심의
- ⑦ 本會 기록유지 방법 및 형식 건 심의·의결
- ⑧ 휴식년회원의 기간 연장 승인
- ⑨ 명예회원 승인
- ⑩ 상조회 운영규칙의 제정 및 개정

단, 위 ③호에서 ⑩호의 사항은 임원회의에서 심의·의결 할 수 있다.

제5장: 교육 및 봉사활동 등

제22조(교육) 本會의 회원교육은 다음 각 항에 의한다.

제1항(교육의 분류) 本會에서 시행하는 교육의 분류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① 기본교육: 本會에 입회하여 정회원이 되기 위한 교육으로, 성보박물관 소장유물 및 본회 회칙 등에 관한 교육을 의미한다.

② 보수교육: 本會 정회원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교육으로, 연간 상반기 하반기 2회 시행한다.

③ 기타 특별교육 등: 흉포가 긴급을 요하는 사안이 발생한 경우에는 특별교육 등

을 시행할 수 있다. 단, 정례화를 요하는 교육 건은 운영규칙으로 규정한다.

④ 本會에서 시행하는 각종 교육의 범주와 내용 및 교육기간에 대한 세부사항은 本會 회장이 회주와 상의하여 수립하고,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다.

제2항(교육의 시행) 本會의 각종 교육의 시행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① 기본교육: 기본교육은 연간 1회 신입회원 교육 시에 시행한다.

단, 시행시기 등등에 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다.

② 보수교육 등: 보수교육(연수) 및 기타 특별교육 등의 시행시기에 대한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다.

단, 신입회원의 기본교육을 보수교육으로 대체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 수료증의 수여

㉠ 보수교육(상·하반기 연수) 수료증은 교육 전 과정을 수료한 회원에게 수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주말 봉사조(토요일과 일요일 봉사조)에 한하여 교육 전 과정 1/20이상을 수료한 회원에게도 수여할 수 있다.

㉡ 기본교육과 특별교육 수료증은 교육 전 과정을 수료한 회원에게 수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외부위탁교육 건은 본회 명의 수료증을 수여하지 아니 할 수 있다. 제23조(봉사활동 등) 本會의 봉사활동 등에 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① 조직: 本會의 봉사조직은 모든 회원을 각 봉사조에 배치하여 편성한다.

② 봉사활동: 本會의 회원은 소속된 봉사조에서 매월 2회 이상의 봉사활동을 원칙으로 한다.

③ 봉사활동을 위한 조직의 편성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근무수칙으로 규정한다.

제6장: 포상 및 징계

제24조(포상) 本會의 회장은 소정의 절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회원에 대하여, 회장의 요청 내지 재적 임원 1/5 이상의 요청 및 당해 봉사조장의 요청으로,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절차를 거쳐 포상할 수 있으며, 회주에게 포상을 건의 할 수 있다.

① 本會의 발전에 기여한 공이 있는 회원

② 봉사활동에 타의 모범이 되어 本會의 명예를 드높인 회원

③ 봉사자의 날 기념법회 포상

㉠ 10년 근속 포상: 아래 기준을 충족한 회원 가운데 회장의 요청으로 운영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다.

㉡ 포상연도 직전 회계연도 말을 기산점으로 하여 만 10년 이전에 本會에 입회하여 포상연도 현재 정회원

(예시)2018년도 10년 근속 포상: 2007년 12월 31일까지 입회한 회원 기준

㉢ 위 기간 중에 연간 봉사일의 70% 이상 출석한 회원

㉣ 위 기간 중에 연간 봉사일의 70% 미만으로 출석한 회원은 해당연도 횡수만큼 포상연도를 연기한다.

단, 2017년 이전의 출결사항은 本 會則에 의한 기록으로 간주한다.

㉔ 우수봉사조 포상: 아래 기준을 충족한 봉사조 가운데 회장의 요청으로 운영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다.

㉑ 전년도 출석율이 우수한 봉사조

㉒ 전년도 결격사유(불성실·근무태만 등등의 지적)가 발생하지 아니한 봉사조

㉓ 위 조건을 충족하는 봉사조 가운데 평일 봉사조와 주말 봉사조를 구성비율(2:1)에 따라 별도로 선정한다.

㉕ 우수봉사자 포상: 아래 기준을 충족한 회원 가운데 당해 봉사조장의 추천으로 운영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다.

㉑ 포상일 현재 본회의 정회원인 회원

㉒ 전년도 출석율이 연간 봉사일의 80% 이상인 회원

㉔ 포상에 대한 세부사항은 운영규칙으로 규정한다.

제25조(징계) 本會의 회장은 소정의 절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회원에 대하여, 회장의 요청 내지 재적 임원 1/5 이상의 요청 및 당해 봉사조장의 요청으로,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절차를 거쳐 징계할 수 있으며, 회주에게 징계를 건의 할 수 있다.

단, 本會의 회장이 징계 대상자인 경우에는 本會 會則 제17조 제2항에 의한다.

① 本會의 會則에 규정한 의무 내지 책무에 심대하게 위배되는 행위를 한 회원

② 本會의 명예를 현저히 훼손한 회원

③ 유연비어 유포 등으로 회원의 단합을 저해한 회원

④ 本會의 재정 및 회계 상에 경제적 손해를 발생시킨 회원

⑤ 조별 봉사활동을 연간 활동일수의 30%를 초과하여 불참한 회원 및 근무편성표를 기준하여 당해 봉사자가 소속된 조별 연간 활동일수의 50% 이상을 봉사일정표상의 定時를 기준으로 60분을 초과하여 지각 또는 60분 이전에 조퇴한 회원

단, 불참과 지각 및 조퇴가 혼재된 경우에 지각·조퇴를 합하여 2회를 불참 1회로 간주하며, 불참·지각·조퇴의 판단근거는 당해 봉사조장의 책임 하에 기록한 本會 소정양식의 출석부에 의한다.

⑥ 우편 및 휴대전화 등을 통한 통신이 사회통념상 불가한 회원

단, 위 ①호·②호·③호의 회원에 대한 징계는 반드시 本會 회주의 승인을 요하며, ④호·⑤호·⑥호의 해당 회원에 대한 징계는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확정된다.

⑦ 징계에 대한 세부사항은 운영규칙으로 규정한다.

제26조(소명권) 징계 대상자의 소명권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①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 후 1개월 이내에 당사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한다.

단, 위 기간이내에 소명을 요청하지 아니한 당사자는 보호하지 아니한다.

② 소명요청의 방법은 증명할 수 있는 서신 또는 전보로 한다.

③ 소명방법: 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직접진술로 한다. 단, 직접진술을 할 수 없는

상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회장에게 서류로 소명자료를 제출하고, 회장은 소명서 접수 후 15일 이내에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이를 공개하고 심의하여 재의결한다.

제27조(포상 및 징계의 종류) 포상 및 징계의 종류는 다음 각 항에 의한다.

제1항(포상) 포상은 회주의 지도방침에 의한다.

제2항(징계) 징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① 제명: 중차대한 범칙행위를 한 회원은 제명조치를 한다.

단, 최종 제명결정은 피징계자에게 서신으로 통보하며,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있다.

제명에 대한 세부사항은 운영규칙으로 규정한다.

② 권고탈퇴: 불성실한 회원은 本會 탈퇴를 권고하고, 자진탈퇴로 처리한다.

단, 권고탈퇴 결정은 피징계자에게 서신으로 통보한다.

또한, 피징계자의 소명에 대한 재의결 시의 가결은 제명으로 한다.

권고탈퇴에 대한 세부사항은 운영규칙으로 규정한다.

③ 권리제한: 경미한 범칙행위를 행한 회원은 자격정지 등 권리를 제한한다.

단, 최종 권리제한 결정은 피징계자에게 서신으로 통보한다.

권리제한에 대한 세부사항은 운영규칙으로 규정한다.

제7장: 정족수

제28조(회의 정족수) 本會의 회의 성립을 위한 정족수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① 총회: 총회는 재적 임원 1/2의 출석과 참석 정회원으로 성립한다.

② 임원회의(월례회): 임원회의에서 당면사안을 심의·의결하고자 할 때는 재적 임원 1/2의 출석으로 성립한다.

단, 당면사안의 심의·의결을 제외한 공지사항의 공시 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나 긴급을 요하는 심의·의결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本會 회장의 요청으로 당해 임원회의에서 출석임원 2/3 이상의 동의를 얻어 당해임원회의 직후 개최하는 운영위원회에서 당면사안에 대하여 심의·의결할 수 있으며, 당면사안의 심의·의결 정족수는 운영위원회의 정족수를 적용한다.

③ 운영위원회: 운영위원회는 재적 운영위원 3/5의 출석으로 성립한다.

제29조(의결 정족수) 本會의 의결을 위한 정족수는 다음 각 항에 의한다.

제1항(총회 의결 정족수) 총회의 의결 정족수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① 일반안건의 추진은 출석회원 1/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本會 해산결정의 추진은 출석회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항(임원회의 의결 정족수) 임원회의 의결 정족수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① 일반안건의 의결은 출석임원 1/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本會 해산·회칙개정·임원 해임 및 총회에서 추진이 부결된 사안을 위한 재심의·의결은 출석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本會 회장 및 감사의 선출은 최다득표자로 의결한다.

단, 선출직 입후보자가 정원과 동수이하인 경우는 운영규칙으로 규정한다.

제3항(운영위원회 의결 정족수) 운영위원회의 의결 정족수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 ① 일반안건의 의결은 출석위원 1/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② 포상 및 징계건의를 위한 의결은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항(가부동수의 의결) 본會 제반회의에서 可否同數일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30조(재적회원 및 출석회원의 정의) 會則 제28조 재적회원(임원, 위원에 준용) 및 會則 제29조 출석회원(임원, 위원에 준용)은 會則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권리의 제한대상을 제외한 회원으로 정의한다. 本會 임원은 그 지위 및 권한을 위임할 수 없다. 단, 會則 제14조 ⑨호에 규정한 각 조별 봉사조장 및 총무의 권한을 해당 회의 개최 전에 명시적으로 위임받은 당해 봉사조원은 위임자로 간주한다.(명시적: 위임장 또는 위임자가 피위임자에게 보낸 위임을 내용으로 하는 휴대전화 문자)

제8장: 회계연도 및 제반행정

제31조(회계연도) 本會의 회계연도는 당해 연도 1월 1일에서 12월 31일로 한다.

제32조(재정의 수입) 本會의 재정수입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 ① 本寺에서 지원하는 本會 운영기금
- ② 성보박물관에서 지원하는 보조금
- ③ 기타 시주금 등

제33조(재정의 지출) 本會의 재정지출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 ① 本會 경상운영비
- ② 本會 회원의 교육비
- ③ 本寺의 행사 협찬비용
- ④ 기타 本會 설립목적 및 사업에 부응하는 제반비용

단, 위 ④호의 제반비용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다.

제34조(기록유지) 本會의 기록유지는 다음 각 항에 의한다.

제1항(일반회무) 本會의 일반회무 기록은 총무가 관장하며, 다음 각 호에 의한다.

- ① 감사 보고서 3부 ② 회장 인수인계서 3부 ③ 회의록 ④ 일일 봉사일지
- ⑤ 월별 활동현황 집계표 ⑥ 자율 출석부 ⑦ 개인별 봉사활동 현황 집계표
- ⑧ 정기법회 출석현황 집계표 ⑨ 업무일지(회장 기록)

제2항(재무회계) 本會의 재무회계 기록은 재무가 관장하며, 다음 각 호에 의한다.

- ① 재무회계 수납장(현금출납장: 수기 및 컴퓨터 기록 인쇄본) ② 지출관련 영수증철 ③ 재산대장(비품대장 포함) ④ 재무회계 통장

제3항(기록유지 방법 및 형식 등) 本會의 기록유지 및 형식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 ① 本會의 감사보고서 및 회장 인수인계서는 3부를 작성하여, 감사보고서는 本會 1부·당해 회장 1부·당해 감사 1부 씩 보관하며, 회장 인수인계서는 本會 1부·당해 인수인계자 각 1부 씩 보관한다.

- ② 기록유지 방법 및 형식은 중대한 사유가 없는 한 전례에 의한다.
단, 기록유지 방법과 형식은 운영규칙으로 규정한다.
- ③ 本會의 특별사업에 대한 기록은 감사보고서 형식을 준용한다.

제9장: 상조회(경조사)

제35조(경조사) 本會 상조회 경조사 관련사항은 다음 각 항에 의한다.

- 제1항(대상) 본회 상조회의 재정지출은 1년 이상 활동한 정회원 및 성보박물관 소임자(정규직 및 임시직 포함)에 한한다.
- 제2항(범위) 정회원 본인·배우자 그리고 정회원의 부모·자녀 경조사로 제한한다.
- 제3항(지출횟수) 정회원 1인에 대하여 1회로 한다.
단, 정회원 본인이 사망한 경우는 위 제3항의 지출횟수에 저촉 받지 아니한다.
- 제4항(지출한도) 3단 형식의 화환 내지 이에 상응하는 금품으로 한다.
단, 정회원 본인이 사망한 때의 상조비는 운영위원회 결정으로 증액할 수 있다.
- 제5항(재정) 상조회의 재정은 성보박물관 과불전 수익금 및 판매 수익금으로 한다.
- 제6항(운영) 상조회의 운영 및 관리는 本會 회주와 협의하여 운영하며, 세부사항은 本會 상조회 운영규칙으로 규정한다.

부칙

제1조(규정의 준용) 本會 會則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통상관례의 범위 내에서 운영위원회의에서 결정한다.

제2조(경과규정) 다음 조치는 아래에 규정에 따라 그 효력을 제한한다.

- ① 本寺 주지스님과 성보박물관장 스님의 문화자원봉사회 봉사활동 개선방침에 의하여 시행한 本會 재편성 시의 연령제한은 재편성('18년 2월 20일) 당시에 한한다.
- ② 本寺 주지스님과 성보박물관장 스님이 공지한 재편성 당시 특별지침('18년 2월 20일 시행)에 의하여 발행한 명예봉사증을 소지한 자는 本會 會則 제7조 ⑤호에 규정한 명예회원으로 간주하지 아니한다.

제3조(하위 규정의 제정) 本會의 會則 제7조·제17조·제21조·제23조·제24조·제25조·제34조에 의거하여, 本會 운영규칙·근무수칙·상조회 운영규칙을 제정한다.

단, 本會 운영규칙·근무수칙·상조회 운영규칙을 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로서 규정하며, 운영위원회의 의결은 이후에 발생하는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서 동일한 구속력을 가진다.

제4조(잔여재산의 처분) 本會 해산 시의 잔여재산은 통도사 성보박물관에 귀속한다.

제5조(시행일) 本會 會則의 시행일은 회칙의 제정(개정 포함)일 翌日로 한다.

會則制定: 佛紀 2543년(1999년) 某월 某일

제1차 발췌개정: 佛紀 2555년(2011년) 12월 某일(임원회의)

제2차 전체개정: 佛紀 2559년(2015년) 6월 2일(임원회의)

*附記: 佛紀 2543년(1999년)에 제정하여, 수차례 개정(연월일 확인 불가)한 本會

會則의 전체개정을 위하여, 각 봉사조에 개정(안)의 제출을 요청한 결과, 佛紀 2559년(2015년) 5월 임원회의 때에 제23조 보궁반에서 제안한 개정(안)을 회칙개정 심의(안)으로 채택하고, 本會 회칙개정소위원회(위원장 本會 남진석 회장, 윤태환 수석부회장, 신인우 고문, 이영복 제23조 조장, 김용관 前 감사)에서 두 차례의 심의(1차 심의: 5월 14일, 2차 심의: 5월 27일)를 하여서, 佛紀 2559년(2015년) 6월 임원회의에 회칙개정(안)을 상정함.

제3차 발취개정: (會則 제18조 ③호 단서조항 추가, 제22조 제2항 ③호 추가, 제24조 ③호 삽입하고 기존 조항은 순연하여 연번을 부여, 제28조 ②호 ③호, 附則 제2조 단서조항 추가) 佛紀 2561년(2017년) 4월 4일(4월 임원회의) 단, 시행일은 2017년 4월 12일.

제4차 발취개정: (會則 제7조 ③호 ④호, 제11조 ②호, 제16조 제2항, 제17조 제2항 ④호, 제18조 ③호 단서조항, 제19조 제2항 ②호, 제23조 ①호, 제24조 ③호, 제25조 본문 ⑤호, 제26조 ③호) 불기 2561년(2017년) 6월 13일(제4차 운영원회의: 6월 임원회의에서 운영위원회에 위임함.)

제5차 발취개정: (會則 제17조 제1항 ①호에 관행을 明文으로 규정, 제22조 제1항 ③호 단서조항, 제2항 ③호 ㄴ 단서조항) 불기 2561년(2017년) 10월 17일의 10월 임원회의에서 논의 후, 全 任員에게 문자공지 2회를 하여 이의제기 여부를 묻고, 이의 없음을 확인하여 2017년 10월 28일 확정하여 11월 임원회의에서 공지함.

제6차 발취개정: (會則 제7조 ①호 ⑤호, 제13조 제2항 ①호, 제14조 ②호, 제17조 제1항, 제23조 ②호, 제25조 ⑤호, 제32조 ②호, 부칙 제2조를 신설하고 기존 조항은 순연하여 연번 부여) 佛紀 2562년(2018년) 3월 20일(운영위원회, 관장스님 승인)

*附記: 佛紀 2562년(2018년) 2월 20일자로 本寺 주지스님과 성보박물관장 스님의 문화자원봉사회 봉사활동 개선방침에 의하여 本會를 재편성하고, 성보박물관장 스님의 지침으로 佛紀 2562년(2018년) 3월 20일에 개최한 本會 제3차 운영위원회에서 회칙개정을 의결하고, 성보박물관장 스님의 승인으로 개정함. 끝.